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주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5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27.

발의의원 : 박주용 의원,

신달호 의원, 이연숙 의원

## 1. 제안이유

현금성 복지 지원을 지양하는 현 정부 정책기조와 가용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입학준비금에 물품을 추가하고, 지원대상의 자격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입학준비금에 물품을 추가하여 입학준비금품으로 확대(안 제2조제3호)
- 나. 지원대상에 거주기간을 추가하여 지원기준 강화(안 제5조제2항~제3항)
- 다. 일반용봉투 지원기준 횡수 삭제(안 제6조제2항)
- 라.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변경에 따른 용어정비

## 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## 4. 관계법령 : 「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입학준비금품”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또는 그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입학준비금”을 “입학준비금품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입학준비금”을 “입학준비금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주민등록을 둔”을 “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개별”을 “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사용·이용 개시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으로 하되, 세부적인 기준은 개별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입학준비금”을 “입학준비금품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가구당”을 “가구당 연간”으로, “연 1회 지원”을 “지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입학준비금”을 “입학준비금품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입학준비금”을 “입학준비금품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” 를 “입학준비금품 지원신청서” 로, “입학준비금 지원 신청대장” 을 “입학준비금품 지원 신청대장” 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“<u>입학준비금</u>”이란 <u>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.</u></p> <p>4. ~ 5. (생 략)</p> <p>제4조(지원내용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입학준비금</u>의 지급</p> <p>2. ~ 4. (생 략)</p> <p>제5조(지원대상) ① <u>입학준비금</u>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자녀로 한다.</p> <p>② <u>일반용봉투</u>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<u>주민등록을 둔 다자녀가정</u>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③ <u>사용료</u> 등의 감면 대상자는 <u>개별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른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입학준비금품</u>”이란 <u>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또는 그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.</u></p> <p>4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지원내용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입학준비금품</u>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원대상) ① <u>입학준비금품</u> 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</u> -----.</p> <p>③ ----- <u>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사용·이용 개시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</u></p>

제6조(지원기준) ①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매년 군수가 정할 수 있다.

② 일반용봉투는 신청한 가정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1,000L 한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7조(지원신청 등) ① 신청인은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, 일반용봉투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8조(지원중단 및 환수) ① (생략)

1. 2. (생략)

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다자녀가정으로 하되, 세부적인 기준은 개별 -----.

제6조(지원기준) ① 입학준비금품액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가구당 연간  
----- 지원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원신청 등) ① ----- 입학준비금품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지원중단 및 환수) ① (현행과 같음)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입학준비금품 -----  
-----.

